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규정 정비(안 제7조)

사업주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한 것으로 보는 서류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함

나. 예술인 노무제공 개시 신고 규정 정비(안 제16조의7)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신설에 따라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 신고 시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중 “산재보험”을 각각 “노무제공자 및 산재보
험”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노
무제공자”로 한다.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
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2호의7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년 월분)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쪽 중 쪽)

(3쪽 중 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만 적용)																			
	소재지										공사명(유기사업명)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직무내용)				(주민등록번호)					(직위)														
																				(근무지)[]본사 []해당 사업장(한정) []다른 사업장(한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자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하는 사람만 적용)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					원					원					원											
		지방소득세		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소득신고
관련

1.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 “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란에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2. “직위 “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 “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 “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임무 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그 밖의 직무
3. “하수급인 관리번호 “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직종부호 “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를 말합니다.(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고, 유급휴가·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
6. “보수 “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간주)을 말하며, “보수총액 “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한 보수를 적습니다.
7. “임금총액 “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이직 사유코드 “: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9. “보험료부과구분 “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	○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납증소)
54	○	x	○	○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	○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8	○	x	x	○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10. “지급월 “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 “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 “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 “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 관리직(임원·부서장)	21. 교육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직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직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22. 법률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직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직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및 기타 사무원	221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54. 경호·경비직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03. 금융·보험직	23. 사회복지·종교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4. 연구·개발·공학 기술직	24. 경찰·소방·교도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직원
041 연구·개발·공학 기술 연구원 042 연구·개발·공학 기술 연구원 043 연구·개발·공학 기술 연구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6. 섬유·의복생산직
05. 연구·개발·공학 기술직	25. 군인	561 청소 종사자 562 세정원 및 방역원 563 가사 서비스원 564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직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06. 연구·개발·공학 기술직	26. 보건·의료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7. 식품가공·생산직
061 연구·개발·공학 기술 연구원 062 연구·개발·공학 기술 연구원 063 연구·개발·공학 기술 연구원	30. 보건의료직	61. 영업·판매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직원
07. 연구·개발·공학 기술직	31. 보건의료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612 기술·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614 텔레마케터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08. 연구·개발·공학 기술직	32. 보건의료직	62. 운전·운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직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직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09. 연구·개발·공학 기술직	33. 보건의료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직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10. 연구·개발·공학 기술직	34. 보건의료직	7. 건설·채굴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11. 연구·개발·공학 기술직	35. 보건의료직	70. 건설·채굴직	9. 농림어업직
12. 연구·개발·공학 기술직	36. 보건의료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90. 농림어업직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7. 보건의료직	8. 설치·정비·생산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135 데이터 전문가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직원 814 냉·난방 설비 조직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직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협 노무제공자 입직 신고서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연 번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월 보수액	입직일
1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1항·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이
고
고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 귀하

유의사항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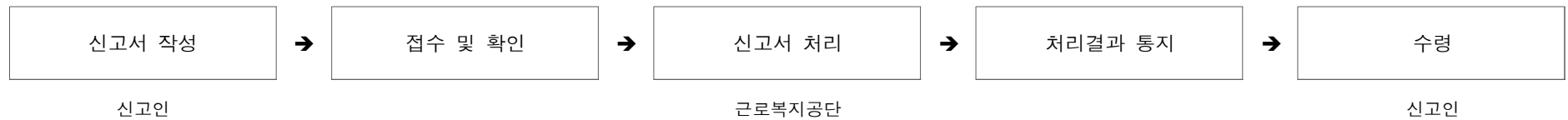
작성 방법

사업장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3쪽]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월 보수액은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선·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4. 노무제공자(제4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1. 산재보험 입직신고서 및 산재보험란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이거나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 12. 31.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입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직종 부호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64 유통배송기사
959 골프장캐디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67 관광통역안내사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958 대리운전기사·택송기사·대리주차원	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3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63 화물차주(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951 방과후학교 강사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86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1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 운송)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처리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뒤쪽)

유의 사항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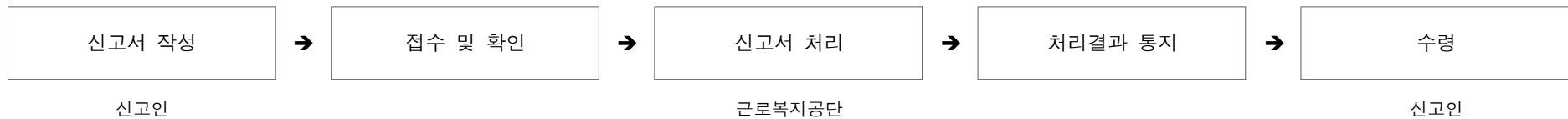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직종부호란에는 [뒤쪽]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계약기간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계약시작일과 계약종료일을 말하며, 계약시작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5. 계약금액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총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6.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직종 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처리 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 ④ (생략)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 ----- ----- ----- ----- ----- ----- ----- --.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또는 <u>산재보험</u>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1. ----- ----- <u>노무</u> <u>제공자 및 산재보험</u> ----- ----- ----- ----- -----
1의2. ~ 2. (생략)	1의2. ~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u>산재보험</u>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	3. ----- ----- <u>노</u> <u>무제공자 및 산재보험</u> ----- ----- -----

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 4. ~ 8. (생략) ⑥ ~ ⑧ (생략) 제16조의7(고용·노무 등의 개시 ·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 제3항·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 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 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 출해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u>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u>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 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② (생략)	----- ----- 4. ~ 8.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7(고용·노무 등의 개시 ·종료 신고) ①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 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 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서</u> 4. <u>노무제공자</u>----- -- ② (현행과 같음)
---	---